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83호)

2022.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2. 4. 25.

다. 회 부 일 : 2022. 4. 2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림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다수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021년 국내총생산 성장률(4.0%)에 비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은 약 2.7%에 불과하고, 농촌의 일손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과 그에 부수하는 특례들의 일몰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
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
(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안 제105조제1항).

IV. 검토의견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배준영의원안, 정점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이원택의원안, 김수홍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류성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장동혁의원안, 김희곤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연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가 합병한 경우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적용기한: <u>2022.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4. 12. 31.(정점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주영의원안)</u> <u>2025. 12. 31.(배준영의원안, 주철현의원안, 김수홍의원안, 류성걸의원안, 정부안)</u>

현 행	개정안
	2026. 12. 31.(이원택의원안) 2027. 12. 31.(윤준병의원안, 장동혁의원안, 김희곤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김선교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류성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3. 1. 1.(배준영의원안, 정점식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이원택의원안, 김수홍의원안)

* 배준영의원안 2022. 4. 25. 발의(의안번호 15383), 정점식의원안 2022. 5. 12. 발의(의안번호 15556), 김선교의원안 2022. 6. 7. 발의(의안번호 15810), 주철현의원안 2022. 6. 8. 발의(의안번호 15822), 이원택의원안 2022. 6. 9. 발의(의안번호 15847), 김수홍의원안 2022. 6. 20. 발의(의안번호 16047), 윤영석의원안 2022. 6. 29. 발의(의안번호 16199), 김주영의원안 2022. 7. 8. 발의(의안번호 16365), 류성걸의원안 2022. 8. 2. 발의(의안번호 16748), 윤준병의원안 2022. 8. 30. 발의(의안번호 17064), 장동혁의원안 2022. 9. 5. 발의(의안번호 17246), 김희곤의원안 2022. 9. 6. 발의(의안번호 17268), 정부안 2022. 9. 1. 제출(의안번호 17151)

□ 13건의 개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2년 말에서 2~5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정점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주영의원안은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배준영의원안, 주철현의원안, 김수홍의원안, 류성걸의원안, 정부안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이원택의원안은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 윤준병의원안은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72조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

대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임.
-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를 위하여 복잡한 세무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 과세표준 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과세표준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음.¹⁾
-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선택한 조합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합법인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

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도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으로 대부분의 공공법인을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로 편입시키고,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동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8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운영
1999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별도 세무조정 없음) · 세율: 12%
2001	·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세무조정 신설
2009	· 세율 인하: 12% → 9%
2013	· 세무조정 대상 확대: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 경비 + 과다경비 등 6개 항목
2015	· 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시 12%
2016	· 2016년까지 합병 시 신설(존속)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동 특례에 따라 2021년에는 총 3,347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4,291억원, 2023년에는 4,665억원으로 조세지출 금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16	2,360	2,451	2,964	3,636	3,271	3,347	4,291	4,665

주: 2022년, 2023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임.

첫째, 영세한 개별 조합법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둘째,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특례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른 공익단체와 비교할 때 지원수준이 과도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단계적인 세무조정 항목 확대 등을 통해 지원수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²⁾ 2020년 심층평가에서는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³⁾

○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동 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 7~8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 12-14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이며 정책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같이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⁴⁾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19년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은 관례적으로 3년간 연장하였으나 2020년 정기회에서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p.139.

2. 농협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 등)

현행	개정안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이용고 배당소득 ○ 한도: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비과세 기한: <u>2022년 12월 31일까지</u>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 비과세 기한: - <u>2024년 12월 31일까지(김선교·윤영석·김주영의원안)</u> - <u>2025년 12월 31일까지(배준영·주철현·김수홍·류성걸의원안·정부안)</u> - <u>2026년 12월 31일까지(이원택의원안)</u> - <u>2027년 12월 31일까지(윤재갑·김경협·윤준병·장동혁·김희곤의원안)</u> - <u>2032년 12월 31일까지(안호영의원안)</u>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 ○ 대상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 ○ 대상소득: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조합원·회원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 ○ 한도: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기관: (현행과 같음) ○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 한도: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비과세 기한: <u>2022년 12월 31일까지</u>	○ 비과세 기한: - <u>2024년 12월 31일까지(정점식·김선교·윤영석·김주영의원안)</u> - <u>2025년 12월 31일까지(배준영·주철현·김수홍·류성걸의원안·정부안)</u> - <u>2026년 12월 31일까지(이원택의원안)</u> - <u>2027년 12월 31일까지(김경협·윤준병·장동혁·김희곤의원안)</u> - <u>2032년 12월 31일까지(안호영의원안)</u>

* 이원택의원안 2022. 3. 28. 발의(의안번호 14971), 배준영의원안 2022. 4.25. 발의(의안번호 15383), 정점식의의원안 2022. 5. 12. 발의(의안번호 15556), 김선교의원안 2022. 6. 7. 발의(의안번호 15810), 주철현의원안 2022. 6. 8. 발의(의안번호 15822), 이원택의원안 2022. 6. 9. 발의(의안번호 15847), 김수홍의원안 2022. 6. 20. 발의(의안번호 16047), 윤영석의원안 2022. 6. 29. 발의(의안번호 16199), 김주영의원안 2022. 7. 11. 발의(의안번호 16381), 윤재갑의원안 2022. 7. 26. 발의(의안번호 16666), 류성걸의원안 2022. 8. 2. 발의(의안번호 16748), 김경협의원안 2022. 9. 1. 발의(의안번호 17140), 윤준병의원안 2022. 9. 1. 발의(의안번호 17142), 윤준병의원안 2022. 9. 2. 발의(의안번호 17189), 장동혁의원안 2022. 9. 5. 발의(의안번호 17246), 김희곤의원안 2022. 9. 6. 발의(의안번호 17268), 안호영의원안 2022. 10. 25. 발의(의안번호 17917), 정부 2022. 9. 1. 제출(의안번호 17151)

□ 개정안들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조합 등⁵⁾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조합 등의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조합원등”이라 함)인 농어민·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하고, 2023년에는 5%, 2024년 이후에는 9%로 저율 분리과세 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해서 김선교·윤영석·김주영의

5)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제8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83조의3 참조).

원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2년간), 배준영·주철현·김수홍·류성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이원택의원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4년간), 윤재갑·김경협·윤준병·장동혁·김희곤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5년간), 안호영의원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10년간)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고,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해서는 정점식·김선교·윤영석·김주영의원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2년간), 배준영·주철현·김수홍·류성걸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이원택의원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4년간), 김경협·윤준병·장동혁·김희곤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5년간), 안호영의원안은 2032년 12월 31일까지(10년간)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서민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조합 등에 대한 조합원등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배당소득), 20세 이상 조합원등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22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에 200만원을 한도⁶⁾로 신

6) 비과세 한도는 1987년 500만원, 1991년 1천만원으로 인상됨(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

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등 5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됨.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100만원을 한도⁷⁾로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등 10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또한, 2020년 세법개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 제한조항⁸⁾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3,76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저축지원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규모임.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	2023년(전망)
금액	5,859	4,863	3,760	3,432	3,69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레 심층평가(Ⅲ)-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8. 9., p. 89.).

7) 비과세 한도는 1978년 500만원, 1987년 1천만원, 1991년 2천만원, 2009년 3천만원으로 인상됨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동안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오는 과정에서 1976년 도입 이래 세제지원이 장기간 이루어져 상호금융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므로 여타 금융기관과 세제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며, 농어민·서민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도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첫째,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등을 위해서도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농어가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2010~2020년 사이 평균 62.3% 수준⁹⁾)임을 감안하면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해서도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또한, 상호금융이 본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무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취급업무와 사업구역의 제한¹⁰⁾ 등으로 제1금융권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고

9)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161.

10) 상호금융(단위조합 기준) 취급상품 제한

구 분	취급 근거법률	제한 사유
신탁, 퇴직연금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양도성예금증서	한국은행법, 금융위규정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미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은행법, 금융위 결정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 가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국공채 창구판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외국환	외국환거래법	환전 등 일부업무 제한적 취급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카드업자에 미포함
주택신용보증서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 미체결
주택청약예금(부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만 취급 허용

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상호금융별로 2021년 기준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13%(농협) ~29%(신협)에 달하고 있음¹¹⁾.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될 경우 조합원 등의 자금이탈을 유발하여 상호금융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져 조합원등이 추가로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¹²⁾에서도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의 3/4정도¹³⁾가 저소득층에 주어지고 있고,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문 의 처

02)6788-5155

자료: 농협중앙회

11)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 77.

1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2022. 9.

13)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 (비과세 예탁금)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인원 비율 : 74.4%,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에서 2천만원 이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73.3% / (비과세 출자금)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인원 비율 : 75.1%, 전체 비과세 이자소득에서 2천만원 이하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75.7%로 나타남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pp. 166~171)

3. 농어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이종배의원안, 김용판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정점식의원안, 이원택의원안, 김수홍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윤재갑의원안,
류성걸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경협의원안, 장동혁의원안,
이달곤의원안, 안호영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제5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적용기한 - <u>2022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4년 12월 31일(이종배·김용판·윤영석·김주영의원안)</u> - <u>2025년 12월 31일(배준영·김수홍·류성걸의원안, 정부안)</u> - <u>2026년 12월 31일(이원택의원안)</u> - <u>2027년 12월 31일(윤재갑·윤준병·김경협·장동혁의원안)</u> - <u>2032년 12월 31일(안호영의원안)</u>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06조제2항) ○ 면제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9호) ○ 적용기한 - <u>2022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4년 12월 31일(이종배의원안)</u> - <u>2025년 12월 31일(김수홍·배준영·류성걸·이달곤의원안, 정부안)</u> - <u>2026년 12월 31일(이원택의원안)</u>

* 이종배의원안 2022. 3. 18. 발의(의안번호 14899), 김용판의원안 2022. 4. 21. 발의(의안번호 15363), 배준영의원안 2022. 4. 25. 발의(의안번호 15383), 정점식의원안 2022. 5. 12. 발의(의안번호 15556),

이원택의원안 2022. 6. 9. 발의(의안번호 15847), 김수홍의원안 2022. 6. 20. 발의(의안번호 16047), 윤영석의원안 2022. 6. 29. 발의(의안번호 16199), 김주영의원안 2022. 7. 8. 발의(의안번호 16365), 배준영의원안 2022. 7. 20. 발의(의안번호 16553), 윤재갑의원안 2022. 7. 26. 발의(의안번호 16666), 류성걸의원안 2022. 8. 1. 발의(의안번호 16712), 윤준병의원안 2022. 8. 29. 발의(의안번호 17038), 김경협의원안 2022. 9. 1. 발의(의안번호 17140), 장동혁의원안 2022. 9. 5. 발의(의안번호 17246), 이달곤의원안 2022. 9. 21. 발의(의안번호 17446), 안호영의원안 2022. 10. 25. 발의(의안번호 17917), 정부안 2022. 9. 1. 제출(의안번호 17151)

□ 개정안은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임.

□ 현재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어민이 공급받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¹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동 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음. 동 제도에 따른 2021년 감면 세액은 1조 8,481억원임.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1년 감면 세액은 34억원임.

[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실적)	2022(전망)	2023(전망)
영 세 율	17,475	18,770	17,763	18,481	21,454	22,929
수입면세	51	36	21	34	73	78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¹⁵⁾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민이 기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둘째,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여

14)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임업용·어업용·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함.

15) 통계청의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수는 2007년 123만호에서 2020년 103만호로 15.8% 감소하였고, 어가 수는 2007년 7만 4,000호에서 2020년 4만 3,000호로 4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히 낮은 편이므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3
2021년	47,759	65.7	52,392	72.1	72,688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¹⁶⁾,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KDI 수행)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나 기자재 사용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 발생과 함께 농가내 소득불균등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2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0년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 바 있음.

□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은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를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세액과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축산업용 기자재, 사료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동일한 부정수급의 경우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
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12월 31일----- -----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 ----- ----- ----- ----- ----- ----- -----. ② 2027년 1월 1일----- ----- ----- ----- ----- ----- ----- ----- -----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 ----- ----- ----- ----- -----
--	---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 ----- ----- ----- -----<u>2025년 1</u> <u>2월 31일</u>-----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